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10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2.

발의자 : 권성동 · 정갑윤 · 정성호
전희경 · 경대수 · 김성태
윤상직 · 여상규 · 이종명
신상진 · 오신환 · 김진태
박범계 · 이춘석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「법원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고, 그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0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

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행정법원”을 “행정법원, 회생법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회생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 10

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서울회생법원 | 서울특별시 |
|--------|-------|

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. 9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에 따라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[별표 10]

회생법원의 관할구역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고등 법원 | 회생 법원 | 관할구역 |
| 서울 | 서울 | 서울특별시 |

신·구조문대비표